

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904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인

2016년 3월 9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의 사장 및 본부장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《신·구조문 대비표》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범위)-----</p> <p>1~5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범위)-----</p> <p>1~5(현행과 같음)</p> <p>6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의 사장 및 본부장</p>